「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

1. 개정이유

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(법률 제20887호)」이 개정됨에 따라 환자실의 기준을 개정하고, 구급차의 내부에 갖추어야 할 장치 중 사용하지 않는 물탱크와 연결된 싱크대를 제외하며,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서 구급차를 즉시 운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, 즉시 운용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조정함

2. 주요내용

가. 환자실의 길이·너비·높이 기준 조정(안 제4조제1항)

1) 구급차 환자실의 길이를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뒷문의 안쪽 면까지 2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함

나. 물탱크와 연결된 싱크대 장치 제외(안 별표 2)

1) 구급차 내부의 공간이 협소한 상황에서 사용하지 않는 싱크대가 큰 공간 차지하고 있어, 구급차의 내부에 갖추어야 할 장치의 기준에서 제외

다. 구급차 운용이 필요한 경우 즉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함(안 별표 3)

1) 응급환자이송업을 위해서는 5대 이상의 특수구급차를 보유하고, 구급차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

2) 다만, 이송수요가 적은 야간에는 보유하고 있는 특수구급차 5대당 1대의 구급차가 즉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함

라. 인력기준 조정(안 별표 3)

1) 보유하고 있는 특수구급차에는 1대당 운전자 2명, 응급구조사 2명을 두도록 함

마. 인용조항 및 인용문구 정비(안 제7조, 별표 3)

1) 인용조항 변경에 따라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8조 제2항을 제3항으로 수정함

2) 인용문구 변경에 따라 “응급의료정보센터”를 “응급의료지원센터”로 수정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　　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　　타 : 신・구조문대비표, 별첨

보건복지부령 제 호

「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령안

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250센티미터”를 “290센티미터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제38조제2항”을 “제38조제3항”으로 한다.

별표 2의 ‘2. 특수구급차’의 ‘다. 물탱크와 연결된 싱크대’란을 삭제한다.

별표 2의 ‘2. 특수구급차’란 중 “라. 교류발생장치”를 “다. 교류발생장치”로 한다.

별표 3의 ‘1. 시설기준’의 ‘마. 통신시설’의 내용란 중 “응급의료정보센터”를 “응급의료지원센터”로 한다.

별표 3의 ‘2. 보유구급차 기준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	구분	내용
	2.보유 구급차 기준	5대 이상의 특수구급차를 보유하여야 한다. 다만, 응급환자이송업을 하려는 자 또는 이송업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숫자의 특수구급차를 즉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 1) 주간 : 보유하고 있는 특수구급차 전체 2) 야간 : 보유하고 있는 특수구급차 5대당 1대에 해당하는 숫자

별표 3의 ‘4. 인력기준’란 중 “특수구급차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”을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.

1.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의 경우 : 2027년 4월 2일
2. 법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의 경우 : 2030년 4월 2일

제2조(환자실의 길이·너비·높이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「자동차관리법」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하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환자실의 길이·너비·높이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「자동차관리법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구급차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환자실의 길이·너비·높이) ① 구급차 환자실의 길이는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뒷문의 안쪽 면까지 2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고, 간이침대 매트리스의 끝에서 뒷문의 안쪽 면 사이에는 25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.	제4조(환자실의 길이·너비·높이) ① ---------- 290센티미터 ----------.
제7조(통신장비) 특수구급차가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8조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통신장비는 운전기사 및 환자실의 응급구조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	제7조(통신장비) ---------- --- 제38조제3항에 ----------.